

기사제목만 잘못 되더라도  
반박문 게재해 주어야  
Hamburg 고등법원  
1986. 1. 19. 판시 -3 U 86/85 사건-

적용법조

Hamburg 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1. 어떤 사람이 잡지의 표지에, 게재된 표제에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씌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써 반박문의 게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2. 「어떤 잡지의 동일한 면」에 반박문을 게재하라는 명령은, 신문의 표지에 관련해서는, 반박문이 표지의 상단부분에 인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단부분에 인쇄할 것을 특별히 부가적으로 명령된 경우에는 별문제이다.

판결이유

I

신청인은 원문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리하여 반박문 게재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본건에 있어서는 한계적인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서 반박문 게재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던 바, 이는 정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신청인의 이름이 오락신문의 표지에 게재된 표제로 게재되어 있었고, 이는 위 표지의 상만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위 기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Dörrenberg 체포하다」라는 것이었다. 그 밖에 「Düsseldorf) 및 「탈세?」라는 문구가 적어져 있었다.

위 기사부분의 전체 폭에 꼭 차도록 눈에 띄게 인쇄된 「Dörrenberg」라는 이름 앞에는, 분명히 이보다 적은 활자로 「공장장」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표지의 상단부분에서 시작되는 관련기사에는 그 전체 이름인 「Richard Dörrenberg 박사(44 세)」라고 씌어져 있었고, 신문의 내부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기사가 보도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온 모든 독자들은 원문기사가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신청인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성은 같고 이름이 달랐으며, 그러고 분명히 나이가 더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 오락신문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상의 주장을 게재한 것이었고, 또한 위 표제의 내용자체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본건 신청인이 원문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 표제는 그 자체로부터 보면, 신청인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표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끔 인쇄되어 있었다. 위 표제는 누구나 금방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그 신문을 사지 않더라도, 구멍가게에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위 신문의 제목만을 훑어보는 사람조차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문 내부에 게재되어있는 관련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읽어 보리라는 것은 보증될 수 없었다. 그리고 위 관련기사가 없는 상태라면, 위 표제가 신청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Düsseldorf 에는 Dörrenberg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과, 사실상의 체포된 자인 Richard Dörrenberg 박사라는 사람, 두 사람이 공장장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 두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세로 인한 구속이 위 연예신문의 표지에 표제로 실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위 표제 자체로부터는 위 두 사람중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다. 신청인은 그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의 대기업의 경영자일 뿐이고, 그 소유자가 아니며, 또한 자세히 음미해 보면 신청인의 기업이 공장으로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도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표제에 「공장장」이라고 추가한 것 만으로서도 신청인의 반박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항소 이유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건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위 표제는 그 자체로부터 보면, 한번도 위 신문의 진정한 독자라고는 할 수 없는 스쳐서 보는 독자에 대해서도, 체포된 사람은 바로 신청인이라고 하는 뉴스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쳐보는 독자들에게 대하여는 「공장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이로써 위 기사가 원래 의도했던 사람을 연상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지방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독자들에게 대하여는, 위 표제가 편집자가 본래 보도하려고 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써 위 기사가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 표제는 현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위 오락신문과 같은 신문은 그 주요 표제만을 읽고, 또한 그 표제로부터 만 그 기사의 내용을 판단해 버리는 독자의 범위는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위 오락신문은 그 표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표제를 통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그 신문을 구입하도록 충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법원에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어떤 통상적인 잡지나 신문의 표제와 그 내용기사의 편집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대한 위와 비슷한 내용의 착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들과 본건과 같은 「오락신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락신문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기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는 Hamburg 언론법에 따라 반박문게재 청구권의 방법에 의하여 위 착각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되는 결과로 된다.

반박문게재청구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언론사가 그 표제에서 이름을 게재한 경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언론사에 대하여 반박문게재의 요구를 해올 위험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실제적으로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신청인을 피해자로 되게 한 것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이름을 특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희귀한 이름, 그 지역 및 직업과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를 특정하여 게재함으로 인하여 독자들에게, 사실상 두 사람만이 관련자로서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이 오락신문에 특별히 눈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제로 게재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들이 없었다면, 신청인이 위 원문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문기사 중에서 단지표제만을 읽은 사람들은 반박문이 게재되더라도 이를 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반박문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결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고방식은 그릇된 정보를 제공 받은 독자들의 일부 만에 대하여서라도 반박문을 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위 원문기사의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이 반박문이 게재된 신문을 알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이 결코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시종일관한 독자들의 행동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표제만을 읽는 전형적인 독자들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 II

반박문의 내용이 타인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박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위 표제기사가 야기한 단순한 「인상」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본건 반박문은 분명히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반박문이 원문기사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건반박문이 위 기사에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신문사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하는 신문사의 부담으로 되는 불이익 한 추론은 문제도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안의 진상을 완전히 밝히게 할 수는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하게 한다면, 피해자는 그 자신의 책임 하에서 그 신문에 보도된 사람을 그 스스로가 밝혀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원문기사에서 보도된 사실상의 주장이 그 자신에 관한 것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원문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 자신이 공격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III

지방법원이 게재를 명한 반박문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원 가처분을 변경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 반박문을 「표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가처분은 그 내용에서 하등적 부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박문은 「위 잡지의 동일한 부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표지」라고 하는 것은 「표지 전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명령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지의 상단부분에 게재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있어서 피 신청인은 반박문이 어느 범위에 있어서 잡지의 표지에 게재될 수 있는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인은, 반박문 게재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원은, 당원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으로써 비로소, 즉 원 판결의 판결이유가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비로소, 위 지방법원이 그의 결정을 달리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원심법원이 그의 구두변론 절차에서 반박문게재 명령의 강화나 또는 그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은 위와 같은 고려를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항소이유서의 내용에는 이러한 점들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의 이유 중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실시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게재명령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고, 또한 가처분의 신청을 그 일부에서 기각하여야 할 여지는 더욱 없는 것이다. 당원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구명을 위하여, 당사자의 대리인들과 접촉을 가졌던 것은, 단지 항소이유에서 기재된 신청인의 신청이 있었고, 또한 원심판결이유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당원에 불분명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록상태에 의하면, 당원에 위와 같은 불분명한 점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